

19. 法人稅法中改正法律

法律 第5,033號 1995.12.29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항 본문중 “계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이라고 인정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의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하는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 제5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으로 한다.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중 “6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백만원)”을 “2천400만원”으로 하고, 동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3.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을 제외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1만분의 5(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1천분의 1)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수 입 금 액	적 용 율
100억 원이하	1천분의 3
100억 원초과 1천억 원이하	3천 만 원 +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
1천억 원초과	2억 1천만 원 + 1천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

제19조 본문중 “제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4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

제22조 제1항의 표중 “100분의 18”을 “100분의 16”으로, “1천800만원”을 “1천600만원”으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28”로 한다.

제24조의3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6항(종전의 제4항)중 “제1항” 다음에 “및 제4항”을 삽입한다.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 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2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제3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의 지분시기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이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금융기관등과 당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9조 제6항중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와 납부”를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등”으로 하여 이를 제7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등을 매도(중개·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1조 제11항 및 제1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5조 제1항 본문중 “계기하는”을 “규정하는”으로 하고, 동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 제7호 및 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거주자·내국법인·제56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① 외국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제외한다)의 국내사업장은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소득금액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당해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

2.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을 위하여 재투자할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서 적용되는 세율은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세율로 하되 우리나라와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9조의2 제9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 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공시지가가 고시되 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 준시가등 기준시가의 산정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3을 삭제한다.

법률 제2686호 부칙 제13조중 “1976년” 을 “1984년”으로, “1977년”을 “1985년”으 로 한다.

법률 제4804호 부칙 제7조 제3항 및 제4 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동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 4항)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③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은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5 년에 지급된 분리과세이자소득과 분리 과세배당소득에 관한 지급조서를 1996 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686호 부칙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77년 1월1일부

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접대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 제1항 및 제5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원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원천징수세액납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후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 여 원천징수한 세액의 최초 납부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다.

제6조(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5 조 제1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한다.

제7조(특별부가세에 관한 적용례) ①제59 조의2 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법률 제2686호 부칙 제13조의 개정규 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 부터 적용한다.

제8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이유◇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의 해외경쟁력강화를 실효성있게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조정하여 기업자금이 생산적인 부문에 투자되도록 유도하는 한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제도를 확충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세제상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가.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비용으로 인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기업의 거래규모에 따라 그 한도가 체감되도록 함으로서 기업의 접대관행을 개선함(법 제18조의2 제1항).
- 나.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하여 기술개발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강화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인세율을 인하함(법 제22조 제1항).
- 다. 국내모기업이 출자한 해외자회사로부터 이익의 배당을 받는 경우 그 외국에서 해외자회사의 소득에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모기업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해외투자활성화를 지원함(법 제24조의3 제4항).
- 라. 기업과세제도의 국제화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외에 법인세 과세후 소득에 대하여도 외국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지점에 대하여 과세하면 우리나라도 과세하도록 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함(법 제57조의2).

〈법제처 제공〉

당신의 집이라면 부실공사 하겠습니까?